

2024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검 토 보 고

일 반 회 계

2025. 8.

교 육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윤 상 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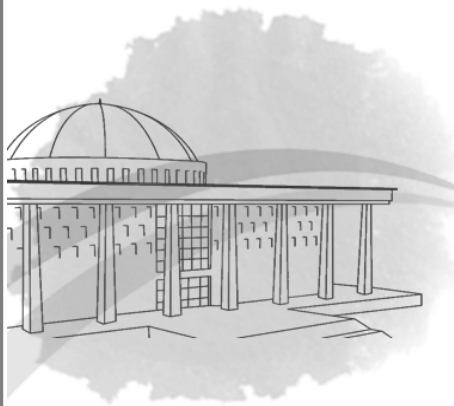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담당

구 분	입법조사관	연락처
국가교육위원회	김광호	6788-5186

목 차

I . 결산 개요	1
1. 총 괄	3
2. 일반회계	5
가. 세입결산	5
나. 세출결산	5
1) 총 괄	5
2) 인건비	6
3) 기본경비(총액대상)	7
4) 기본경비(총액비대상)	8
5) 주요사업비	9
6) 이체 · 이용 · 전용	10
7) 이월 및 불용	11
3.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재무제표 분석	13
가. 재정상태 분석(재정상태표)	13
나. 재정운영 분석(재정운영표)	14
다. 순자산변동 분석(순자산변동표)	15
II . 검토의견	17
1. 세출	19
가. 국가교육위원회	21
1)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21
(1) 국민의견 수렴 · 조정 성과 미흡	22
(2)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회의 참여 저조	25
(3)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 관련 관리 필요	29

1. 결 산 개 요



1. 총 괄

□ 2024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 1개 회계로 구성됨.

□ 2024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0원임.

< 2024년도 세입예산 및 기금수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분	세입예산액 /수입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총계	0	-	-	-	-	-
예산	0	-	-	-	-	-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2024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액 102억 7,900만원의 82.2%인 93억 8,200만원으로, 8억 4,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으며 11억 8,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 >

(단위 : 백만원, %)

회 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10,279	11,419	9,382	849	1,188	82.2
일 반 회 계	10,279	11,419	9,382	849	1,188	82.2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2.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 2024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0원임.

나. 세출결산

1) 총 괄

□ 2024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2억 7,900만원임. 예산현액은 114억 1,900만원으로 이 중 82.2%인 93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4,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 8,800만원을 불용 처리함.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이월액	불용액
2024년도	10,279	11,419	9,382	849	1,188
2023년도	9,891	9,919	7,533	1,140	1,245
증감률	3.9	15.1	24.5	△25.5	△4.6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액 93억 8,200만원을 주요 내역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27억 9,200만원, 기본경비 21억 6,500만원, 주요사업비 44억

2,400만원임.

< 2024년도 세출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 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이용 이체액				
계	10,279	1,140	-	-	-	11,419	9,381	849	1,188
인건비	2,970	0	-	-	-	2,970	2,792	-	178
기본경비 (총액대상)	614	41	-	-	-	655	475	-	179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1,922	229	-	-	-	2,151	1,690	133	328
주요 사업비	4,773	871	-	-	-	5,644	4,424	716	503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2) 인건비

- 2024회계연도 인건비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과 동일한 29억 7,000만원으로, 이 중 94%인 27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7,800만원은 불용 처리함.

< 2024년도 인건비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 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등 감(△)액	이용 이체액				
합계	2,970	-	-	-	-	2,970	2,792	-	178
인건비(110)	2,970	-	-	-	-	2,970	2,792	-	178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3) 기본경비(총액대상)

- 2024회계연도 기본경비(총액대상)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6억 1,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100만원 증액된 6억 5,500만원으로, 이 중 72.5%인 4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900만원을 불용 처리함.

< 2024년도 기본경비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 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이용 이체액				
합계	614	41	-	-	-	655	475	-	179
인건비(110)	257	41	-	-	-	297	254	-	43
운영비(210)	205	-	-	-	-	205	94	-	111
직무수행경비(250)	85	-	-	-	-	85	85	-	-
민간이전(320)	67	-	-	-	-	67	42	-	25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기본경비(총액대상) 이월액은 없으며,
- 기본경비(총액대상) 불용액 1억 7,900만원은 운영비, 인건비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주된 사유는 집행 잔액임.

4) 기본경비(총액비대상)

- 2024회계연도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19억 2,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억 2,900만원을 포함한 21억 5,100만원으로, 이 중 78.6%인 16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300만원을 이월하여 3억 2,800만원을 불용 처리함.

< 2024년도 기본경비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 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이용 이체액				
합계	1,922	229	-	-	-	2,151	1,690	133	328
운영비(210)	938	89	-	-	-	1,027	709	19	298
여비(220)	50	25	-	-	-	75	54	-	21
업무추진비(240)	60	4	-	-	-	64	63	-	2
연구용역비(260)	450	111	-	-	-	561	491	69	1
유형자산(430)	424	-	-	-	-	424	373	46	6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이월액 1억 3,300만원은 연구용역비, 유형자산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이 중 연구용역비는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한 것임.
- 기본경비(총액비대상) 불용액 3억 2,800만원은 운영비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주된 사유는 집행 잔액임.

5) 주요사업비

- 주요 사업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7031-316)’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47억 7,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8억 7,100만원을 포함한 56억 4,400만원으로, 이 중 78.4%인 44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1,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300만원을 불용 처리함.
- 다음연도 이월액 7억 1,600만원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운영비 4억 2,000만원, 연구용역비 2억 9,600만원으로, 연구센터용역 및 정책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임.
- 불용액 5억 300만원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운영비 3억 9,600만원, 여비 5,5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연구용역비 5,000만원으로 그 주된 사유는 집행잔액임

< 2024년도 주요사업비(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 결정후 증감(△)액				예산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이용 이체액				
합계	4,773	871	-	-	-	5,644	4,424	716	503
운영비(210)	3,647	300	-	-	-	3,947	3,131	420	396
여비(220)	86	-	-	-	-	86	31	-	55
업무추진비(240)	40	-	-	-	-	40	38	-	2
연구용역비(260)	1,000	571	-	-	-	1,571	1,224	296	50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6) 이체 · 이용 · 전용

- 국가교육위원회가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이체 및 이·전용 실적이 없음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변동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A)	2023년(B)	증감(A-B)	증감률(%)
이 체	-	9,891	△9,891	순감
이 용	-	-	-	-
전 용	-	579	△579	순감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7) 이월 및 불용

- 2024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서 8억 4,900만원 이월과 11억 8,8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 및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A)	2023년(B)	증감(A-B)	증감률(%)
사고이월	849	1,140	△291	△25.5
불 용	1,188	1,245	△57	△4.6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이월의 주요 사유는 연구센터 용역 사업의 실제 사업기간과 회계연도의 불일치에 따른 사고이월 및 정책연구용역의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로, 주요 이월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4년도 일반회계 주요 이월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 사유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133	-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716	- 연구센터용역(420백만원) 계약기간과 회계연도 불일치에 따른 사고이월 - 정책연구용역(296백만원) 계약기간 미 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계	849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불용의 주요 사유는 인건비, 운영비 및 주요사업비의 집행잔액으로, 주요 불용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4년도 일반회계 주요 불용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불용액	불용 사유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	178	인건비 집행잔액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대상)	179	인건비, 운영비, 민간이전 집행잔액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328	운영비 등 집행잔액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503	운영비, 연구용역비 등 집행잔액
계	1,188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3.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재무제표 분석

가. 재정상태 분석(재정상태표)

- 국가교육위원회의 '24 회계연도 자산은 전기 대비 10억 9,400만원이 증가한 30억 6,300만원으로, 부채는 0원임.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30억 6,300만원임.

<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재정상태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A)	2023(B)	증 감	
			금액(C=A-B)	비율(C/B)
자 산	3,063	1,969	1,094	55.6
부 채	-	-	-	-
순 자 산	3,063	1,969	1,094	55.6

- 자산은 국가교육위원회 업무포털 구축사업 등 선급금이 집계됨에 따라 유동자산이 전기 대비 6억 500만원 증가하였고,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 등으로 일반유형자산이 전기 대비 1억 7,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및 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사업 등 신규취득 등으로 무형자산이 전기 대비 3억 1,200만원 증가하였음.
- 2024회계연도 말 국가교육위원회의 부채는 0원임.

나. 재정운영 분석(재정운영표)

- 국가교육위원회의 2024년도 프로그램순원가는 전기 대비 23억 6,000만원 증가한 87억 4,100만원으로, 재정운영순원가 및 재정운영결과도 동일함.
- 2024년도 재정사업 운영에 따른 직접비용인 프로그램 순 원가는 87억 4,100만원이며, 2024년도 관리운영비 등은 없음.
- 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은 없음.

<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재정운영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A)	2023(B)	증 감	
			금액 (C=A-B)	비율(C/B)
I. 프로그램순원가	8,741	6,381	2,360	37.0
II. 관리운영비	-	-	-	-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	-	-	-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8,741	6,381	2,360	37.0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8,741	6,381	2,360	37.0

다. 순자산변동 분석(순자산변동표)

- 국가교육위원회의 2024년도 기말 순자산은 전기 대비 10억 9,400만원 증가한 30억 6,300만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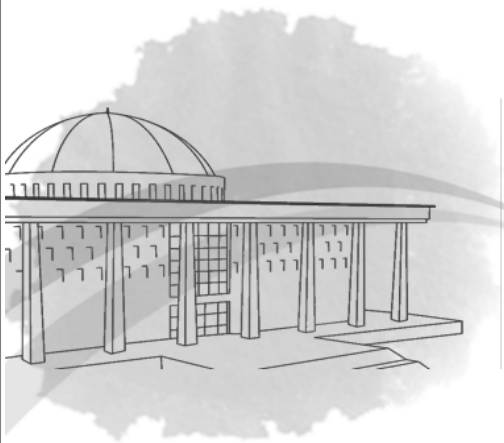
<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순자산변동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A)	2023(A)	증 감	
			금액(C=A-B)	비율(C/B)
I. 기초순자산	1,969	374	1,595	426.5
II. 재정운영결과	8,741	6,381	2,360	37.0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9,835	7,977	1,858	23.3
IV. 조정항목	-	-	-	-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3,063	1,969	1,094	55.6

- 재정운영결과 및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기 대비 각각 23억 6,000만원 및 18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의 세부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재원의 조달은 국고수입이 93억 8,200만원으로 전기 대비 18억 4,900만원 증가하였으며, 기타재원조달이 900만원 증가함에 따라 총 18억 5,800만원 증가함.
- 조정항목의 증감은 없음.

|| . 검 토 의 견



1. 세 출

가. 국가교육위원회

<일반회계>

1)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7031-316) 사업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법정회의 등 운영”, “교육연구센터 운영 및 정책연구”,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지원”,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결산개요

-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현액은 본예산 47억 7,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7,100만원을 합한 56억 4,400만원이며, 그중 7억 1,600만원이 이월되고 5억 3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78.4%인 44억 2,400만원이 집행됨.

1) 문의: 02-6788-5187

<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4,773	871	5,644	4,424	716	503	78.4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나) 검토의견

(1) 국민의견 수렴·조정 성과 미흡

-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0조²⁾는 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③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명시하고 있음.

그중 국민의견 수렴·조정 사무는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3조³⁾에

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다.

1.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르면 ① 국회·대통령·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②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에 국가교육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수행함.

□ 한편,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래 제1호에 따라 대통령·국회·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요청한 사례는 없고, 제3호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하기로 심의·의결한 사례 역시 없음.

□ 제2호에 따른 국민의견 수렴은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의견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국민이 해당 플랫폼에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요청하고 90일 내에 10만명 이상의 국민이 해당 요청 취지에 동의하는 경우⁴⁾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되어 절차가 진행됨.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의견 수렴·조정절차의 진행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요청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하며, 심의·의결 결과 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청 절차 및 처리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국민의견 수렴·조정절차의 진행여부,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2024년 해당 플랫폼에 게시된 요청 건수는 2건에 불과하고 그중 동의요건을 충족한 요청은 없으며, 2025년에도 7월 기준 총 6건⁵⁾의 요청이 게시되었으나 동의요건을 충족한 요청은 없었음.

□ 참고로, 해당 사무 추진과 관련하여 2024년도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을 위한 설문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 예산 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불용되었고,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역시 일부 편성되었지만 2024년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음⁶⁾에 따라 관련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음⁷⁾.

□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견 수렴·조정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5)

요청 내용	동의기간	동의인원
국민청원을 통한 교육위원회 회부건 신속하게 처리	25. 5. 3. ~ 25. 8. 1.	3명
국가 대학 장려 정책 반성, 대학-사회 간 상생적 발전과 조정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25. 5. 8. ~ 25. 8. 6.	0명
성문고 학생들의 여성혐오적 행위 및 학교의 사건 은폐시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	25. 5. 27. ~ 25. 8. 25.	1명
학생이 제안하는 교권 존중 실천 방안	25. 6. 5. ~ 25. 9. 3.	0명
전국 학력평가의 내신 평가 반영	25. 6. 5. ~ 25. 9. 3.	1명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 선 정책추진 후 의견수렴	25. 6. 13. ~ 25. 9. 11.	0명

6)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는 2025년 3월 구성되었음.

7) 2024년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를 포함한 3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4억 9,400만원 편성됨.

(2)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회의 참여 저조

-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6조제1항⁸⁾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2024년 국민참여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17조⁹⁾에 따라 499명의 위원(위원장 포함 500명)으로 구성되어었는데, 학생, 학부모, 교육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 집단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음.

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민참여위원회) 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둔다.

②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한다.

③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및 직능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국민참여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국민참여위원회의 자문 업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

2. 교육·문화·언론·고용·산업·복지·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국민참여위원회의 회의는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

직능		인원수	비율
공개모집	학생·청년	80명	16.0%
	학부모	101명	20.2%
	교육관계자	128명	25.7%
	일반국민	66명	13.2%
지자체추천		124명	24.9%
계		499명	100%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제출

□ 2024년 국민참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6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음.

< 2024년 국민참여위원회 회의 진행 내역 >

일시	토론주제	참석인원
'24. 4. 23. (14:00~17:30)	(워크숍) 저출생·고령화, 인공지능 등 디지털 대변혁 및 다문화·양극화 사회에서 바람직한 교육의 변화방향 및 핵심 추구 가치	134명
'24. 6. 26. (19:00~22:00) '24. 6. 28. (15:00~17:00)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교육의 한계에 대해 평가하고 미래 교육의 변화방향 논의	167명
'24. 9. 30. (18:00~20:30) '24. 10. 10. (14:00~16:30)	미래교육 비전에 대한 의견제시, 12+1 주요 방향(안)에 대한 직능별 토론 실시	145명
'24. 11. 29. ~'24. 12. 29. (14:00~17:00)	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학 정원 조정 방식 ② 교원 자격의 개방성 등	176명
	① 고교내신 공신력 확보방안 ②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③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방식	131명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내 서·논술형 문항 도입 ② 진로형 수능체제 도입 등 수능체제 이원화 여부	133명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제출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 그런데 각 회의별 참여 위원의 수를 살펴보면 평균 회의 참여 인원이 최소 131명 최대 176명으로 회의당 평균 참석위원은 150명 미만으로 집계된바, 전체 위원이 499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참여율이 낮은 상황임.

특히 위원별 회의 참석현황을 살펴보면 499명의 위원 중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224명으로 전체의 44.9%에 달하고, 그 외에도 참석 횟수가 1회인 위원이 74명(14.8%)으로 조사됨.

< 위원별 회의 참여 현황 >

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계
명	224	74	54	56	37	37	17	499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제출

□ 국민참여위원회 위원들의 경우 비상근 위원에 해당하여 각자의 생업과 학업 등의 사유로 회의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회의 일정을 평일 저녁 또는 주말로 계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여가 저조한 측면이 있음.

□ 국민참여위원회가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의 회의 참여율이 높아야 국민참여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

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참여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위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위원 모집 단계에서 회의 참여 의사가 큰 국민이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 관련 관리 필요

-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 중에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에 관한 사항(제2호)”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법 제12조¹⁰⁾는 위원회가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면서(제1항),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을 하여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2항).
-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12조¹¹⁾는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② 같은 조 제2항에

1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①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하여 조사·분석 및 점검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이하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은 시·도 교육청별, 학교급별, 교과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제2조제3호의 학부모

4.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사회 각계 인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④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따른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활동은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하는 “정기 모니터링” 업무¹²⁾와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수시 모니터링” 업무¹³⁾로 구분됨.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10조¹⁴⁾는 모니터링단은 정기 모니터링 결과를 연 2회 제출하고 수시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모니터링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2024년 모니터링단의 활동내역을 살펴보면 수시 모니터링 활동은 총 9회(2기 모니터링단 4회) 이루어졌고 고시 상의 규정에 따라 회의 보고가 완료되었으나, 정기 모니터링 활동은 2024년 12월 14일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된 점검 의견 제시 협의회 1회만 보고됨¹⁵⁾.

12)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을 위하여 매년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3)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장관·교육감 협의체·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하며, 같은 조 제6항은 이 경우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14)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결과 보고 등) ① 모니터링단은 정기 모니터링 결과를 연 2회 제출하고, 수시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모니터링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해당연도 모니터링 운영 결과를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보고사항) >

순	구분	내용	참여	기간	비고
1	계획(안)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수립·변경 계획(안)	140명	'24.4.30. ~ 5.9.	제30차 회의 보고 ('24.5.10.)
2	계획(안)	초1,2학년 신체활동 통합교과 관련 수립·변경 계획(안)	154명	'24.5.28. ~ 6.12.	제31차 회의 보고 ('24.6.14.)
3	수립·변경 (안)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시안(안) ※ ①고교체제, ②2028 대입제도, ③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④「국가유산기본법」, ⑤직업계고 등 관련	157명	'24.6.19. ~ 7.5.	제32차 회의 보고 ('24.7.16.)
4	수립·변경 (안)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 ※ ①고교체제, ②2028 대입제도, ③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④「국가유산기본법」, ⑤직업계고 등 관련	140명	'24.7.17. ~ 8.6.	제33차 회의 보고 ('24.8.9.)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제출

<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 및 점검 지원(보고사항) >

순	구분	내용	방법	참여	기간
1	연수 및 협의회	2024년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의견 제시	대면	70명	'24.12.14.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제출

- 국가교육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협의회 개최('24.12.) 이외에도 다수의 정기 모니터링 활동이 있었으나 공식적인 결과 보고가 이루어 지지는 않았고,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 및 점검 업무에 정기 모니터링

15) 국가교육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보고된 '2024년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결과 및 2025년 실시계획(안)'에서도 조사·분석·점검을 위해 실시 전반에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등 검토·자문이 2024년 12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었고,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서도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단 활동 건수가 1건[협의회 개최('24.12.)]으로 나타남.

링 활동의 결과가 반영되어 보고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¹⁶⁾.

<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 및 점검 지원 활동 >

순	구분	내용	기간	방법
1	설계 단계	- 2024년 국가교육과정 조사 설계안에 대한 의견 제시 - 유, 초1~2학년 대상 조사 항목과 방법 등에 대한 의견 제시	'24.5.~8.	서면
2	실시 단계	- 2024년 국가교육과정조사 결과에 대한 적절성, 타당성 등 의견 제시	'24.9~12.	대면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제출

□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정기 모니터링에 대한 공식적인 결과 보고가 아닌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 및 점검 업무 보고에 정기 모니터링 결과를 포함하여 보고하는 것도 「고시」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결과 보고로 본다면 모니터링단에게 정기 모니터링 결과를 연 2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 고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정기 모니터링단 운영 현실과 맞지 않은 것으로 보임¹⁷⁾.

□ 동 고시가 실제 모니터링단 구성·운영이 이루어지기 전인 2023년 3월에 마련됨에 따라 운영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

16) 국가교육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설계(안)의 경우 정기 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결과(개선방안)가 반영되어 있다고 함.

17) 동 고시가 모니터링단에게 정기 모니터링 결과를 연 2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모니터링 횟수보다 제출 횟수가 축소될 우려도 있어 보임.

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교육위원회는 향후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는 「고시」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정기 모니터링 활동 결과와 관련하여 보고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